

##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사업별 하위지침 제 · 개정

윤종민 · TTA 관리본부 사업관리부장

- 1. 추진배경
- 2. 추진방향
- 3. 주요 제 · 개정내용

붙임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규정 변경내역 및 체계

### 1. 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부처별로 관리되어 연구 개발의 기획 및 과제선정, 진도관리와 결과평가, 연구성과의 활용 및 제재조치 등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 2001년 1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기본법(11조)에 근거를 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2001년 12월 20일 공포(2002년 3월 19일 시행)하게 되었고,
-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2002. 5. 17 개정)과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하위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2. 추진방향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하위지침 제 · 개정 작업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 1) 제 규정(요령, 지침, 세칙)의 통 · 폐합 작업을 통한 규정의 간소화
  - 장관이 정하는 요령 7건은 사업특성에 따라 별도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요령 4건만 유지
  - 원장이 정하는 지침 12건은 기능별로 통합하여 7건으로 축소
- 2) 협약 및 수행관리 절차의 개선을 통해 수행기관의 자율성 증대 및 이용자 위주의 지원체계 구축
  - 협약변경시 승인사항, 통보사항 대폭축소
  - 장기간에 걸쳐 추진이 필요한 계속과제의 경우 다년도 협약제도 도입

3)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정
-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카드제 도입
- 연구개발 과제선정 결과의 공개

3. 주요 제·개정 내용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하위지침은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지침이므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하위지침 제·개정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5월 17일 개정고시된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하위지침의 제·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결과평가 등을 위한 사업 심의회와 평가위원회에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여 객관성을 제고(제9조)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시 최근 3년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과제를 우대하는 근거 마련(제16조)
- 연구개발과제 선정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대외에 공개하도록 하여 선정결과 투명성을 확보(제18조)
- 연구의 지속성과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계속과제의 경우 5년 이내에서 다년도 협약을 체결(제19조)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협

약해약의 근거를 마련(제21조)

-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을 현재 기초·기반기술 분야 등 분야별로 차등화 하던 것을 참여기업 형태별로 변경(제23조)
  - ※ 개정전 : 기초·기반 연구(100%), 산업적 연구(75%), 경쟁전 기술개발(50%)
  - ※ 개정후 : 대기업 50%이내, 중소기업 75%이내 등
- 연구개발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비 카드제 도입 및 연구개발비 변경시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를 수행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는 경우에 한해서 관리기관장이 승인(제24조)
- 연구개발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하도록 하고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계속과제에 한하여 이월·사용(제25조)
- 상대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쟁적인 연구분위기 조성(제30조)
- 비영리기관이 관리기관에 납입하는 기술료를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고, 기술료의 사용범위를 명확히 함(제39조)
-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기준을 1 ~ 2년 이내로 통일(제47조)

2)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하위지침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하위지침 제·개정은 크게 체계정비와 관리 및 지원체계 개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큰 흐름에 따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각 지침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체계정비

- 지원 사업별로 장관이 정하는 요령 7건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별도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요령 4건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통합 또는 폐지
  - ※ 폐지 : 산업기술 개발사업, 대학 기초기술 연구지원사업, 학술진흥 사업 관련 요령

- ※ 유지 : 기술이전촉진요령, 창업지원센터지원사업관리요령, 전문교육지원사업관리요령, 전문투자조합운용·관리요령
- 원장이 정하는 지침 12건은 기능별로 통합하여 7건으로 축소
- ※ 폐지 : 정보통신우수시범학교지원사업관리지침,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 지적재산권관리지침, 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선도기술무상실시허여세부시행지침, 대학기초연구지원사업관리지침,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사업심의위원회운영지침, 정보통신연구개발신용도관리지침
- ※ 유지 : 연구개발비산정기준(원장 제정후 장관승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인센티브지급지침, 기술료심의위원회운영지침,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세칙, 정보통신연구개발평가관리지침, 연구비카드제운영지침

◎ 관리 및 지원체계의 개선

-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협약 및 수행관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
  - ▷ 협약연구비 변경시 인건비 및 위탁연구비가 20% 증액시 외에는 관리기관에 통보만 하도록 하고 통보횟수도 최종변경시 1회로 제한하여 절차 간소화
  - ▷ 산업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항목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산 등 관리업무 최소화
  - ※ 여비, 수송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홍보비, 간접경비 및 연구개발준비금 불인정
    - ▷ 기업체 부담금중 현금부담에 대해서만 정산하고, 현금부담분에 대해서는 정산에서 제외
    -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정산잔액 반납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채권추심 근거 마련
-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증대하는 등 이용자 위주의 지원체제로 개편하고 연구개발의 성과 활용도 제고

- ▷ 간접경비를 인건비와 직접비의 15%안에서 자율적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박사과정 등에 지급하는 외부인건비 단가를 인상하여 우수인력의 참여 유도
- ※ 박사과정 : 680,000원 → 1,200,000원,
  - ※ 석사과정 : 560,000원 → 800,000원
- ▷ 연구비 카드제 도입에 따라 증빙서류를 카드 매출전표 대신 매월 청구되는 카드사용 내역서로 같음하는 등 증빙서류 간소화
-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평가 등에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이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
  - ▷ 전문가 및 기술코드 관리절차, 신용도 관리, 평가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비 및 평가위원 명단 등 과제선정 결과공개

◎ 세부 제·개정 내용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 주관연구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과제선정 결과를 공개하여 과제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규모, 평가위원 명단 등 5개항목을 공개
  - 협약 변경절차 간소화로 업무부담 경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 비목간 연구비 변경 등 10개 항목의 승인사항을 5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통보사항은 승인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에서 참여연구원의 변경 등 3개 항목으로 축소
    - ▷ 협약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기한을 과제종료 2개월전에서 과제종료 1개월전으로 연장
- 연구비카드제 도입으로 연구비 집행 투명성 확보, 효율성 제고
  - ▷ 연구비 집행은 연구비 카드사용을 원칙으로하고, 부득이할 경우 계좌이체 및 현금사용 허용
  - ▷ 연구비 카드 사용분에 대한 증빙은 카드 매출전표 대신에 매월 청구되는 카드사용 내역서로 대체하여 증빙 간소화
- 연구비 정산절차 합리화로 업무부담 경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주관연구기관에 참여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정산서류 검토의무 부여

▷ 연구개발 결과평가가 “우수” 이상인 과제는 공인회계사 의견서(자재감사인 의견서)로 연구개발비 정산 같음

▷ 관리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로부터 연구개발비 정산서류를 확인받아 제출할 경우 공인회계사 확인서로 연구개발비 정산 같음

• 정산잔액 미반납시의 채권추심 실시

▷ 정산잔액 반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정산잔액 반납이 지체된 경우 채권추심절차 진행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 전문가 등록 및 삭제기준 명시로 전문가 질적향상 도모

▷ 산·학·연·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등록기준 마련

▷ 전문가 등록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 5개 항목의 전문가 삭제기준 마련

• 전문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용도 관리 실시

▷ 평가참석 여부, 전문성, 공정성 등을 통하여 신용도 관리

• 전자평가제도 도입으로 평가업무의 효율성 증대

▷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시 전자평가 실시

▷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평가결과 취합의 편리성 제고

• 계속평가 및 결과평가시 상대평가 도입으로 경쟁적 연구환경 조성

▷ 계속·결과평가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절대평가 병행가능

▷ 경쟁적 연구환경 조성으로 우수한 연구결과물 산출이 가능

• 이의신청 및 재평가 절차와 방법 마련 평가의 공정성 확보

▷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

▷ 이의신청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용자 위주의 업무 처리 가능

• 사업설명회,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사전공개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설명회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공개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연구비산정기준

• 연구개발비 비목체계 개선

▷ 연구개발비 비목체계를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 등 4개 비목으로 구성

• 산업기술 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항목 명시

▷ 산업기술 개발사업은 인건비, 직접비 중 재료비 및 연구 기자재비, 위탁 연구개발비(간접비 제외), 간접비 중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비에 한해서 연구개발비 지원

• 인건비 산정기준 변경 및 석·박사과정에 대한 외부인건비 단가 인상을 통하여 우수인력의 참여 유도

▷ 내부인건비 산정기준을 직급별 평균임금에서 실질급 인건비로 변경

▷ 외부인건비 단가인상

※ 박사과정 : 680,000원 → 1,200,000원,

※ 석사과정 : 560,000원 → 800,000원

• 직접비에 반영되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를 간접비에 편성하고, 사업별 정산을 실시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유지에 소요되는 실소요경비를 지원

○ 연구비카드제 운영지침

• 연구비카드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명시

▷ 연구비카드 신청, 발급, 사용, 연구기관의 의무 등에 연구비 카드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붙임 :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규정체계 변경내역

현행	제·개정 내역	제·개정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li> <li>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li> <li>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선정지원지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li> <li>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li> <li>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선정지원지침</li> </ul>	장관고시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관리요령</li> <li>정보통신기술이전촉진지침</li> <li>대학기초기술연구지원사업 시행요령</li> <li>대학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지원사업 관리요령</li> <li>정보통신전문교육지원사업관리요령</li> <li>정보통신학술진흥사업관리요령</li> <li>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 운용·관리 요령</li> </ul>	<p>&lt;폐지요령(3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관리요령</li> <li>대학기초기술연구지원사업시행요령</li> <li>정보통신학술진흥사업관리요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기술이전촉진요령</li> <li>대학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지원사업 관리요령</li> <li>정보통신전문교육지원사업관리요령</li> <li>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 운용·관리 요령</li> </ul>	장관제정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기준</li> <li>정보통신우수시범학교지원사업관리 지침</li> </ul>	<p>&lt;폐지지침(1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우수시범학교지원사업관리 지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산정기준</li> </ul>	원장 제정후 장관승인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li> <li>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인센티브지급 지침</li> <li>지적재산권관리지침</li> <li>기술료심의위원회운영지침</li> <li>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선도기술 무상실시허여세부시행지침</li> <li>정보통신출연연구사업수행관리지침</li> <li>대학기초연구지원사업관리지침</li> <li>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사업심의 위원회운영지침</li> <li>정보통신연구개발신용도관리지침</li> <li>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세칙</li> </ul>	<p>&lt;폐지 지침(6)&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li> <li>지적재산권관리지침</li> <li>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선도기술 무상실시허여세부시행지침</li> <li>대학기초연구지원사업관리지침</li> <li>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사업심의 위원회운영지침</li> <li>정보통신연구개발신용도관리지침</li> </ul> <p>&lt;신규제정(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li> <li>연구비카드제운영지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인센티브지급 지침</li> <li>기술료심의위원회운영지침</li> <li>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li> <li>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세칙</li> <li>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li> <li>연구비카드제운영지침</li> </ul>	원장제정 (10→6)

